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24. 08. 23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3항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목 차

## I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에 근거한 비공개 기준

###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4 재판·수사형의 집행 등 관련 정보 -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 ❖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고,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 6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7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II 소관업무별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경영기획팀	기획 홍보 파트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구리시장 및 사장의 지시사항 처리	•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 할 수 있는 정보	제2호
		이사회 운영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법무·송무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관련 사항	• 수사 관련 민원서류, 고발서류, 증거서류, 처분서 등	제4호
		민원접수처리	•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총무 파트	건강검진	•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과 관련된 정보	제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전시운영, 민방위, 비상계획		• 을지연습, 직장에비군,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총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 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제2호
	보안조치 계획		• 공사 청사 설계도 관련 사항	제3호
	임원추천위원회		• 위원회 회의록, 위원 명단 및 개인정보, 심의 의결 내용 등 관련 자료	제5호, 제6호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 명단 및 개인정보, 승진 심사, 개인의 징계 내역, 심의 의결 내용 등 관련 자료	제5호, 제6호

재무 파트	시험·인사관리	• 임직원 채용 및 임용 관련 내부계획, 출제위원 명단,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인사관리	• 임직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제6호
	급여관리	• 직원 개인별 연봉 내역	제6호
	인사기록 관리	• 학력 및 경력, 비워직원 인적사항,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등 개인 정보 포함 자료	제6호
	근무성적평정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제6호
	복무관리	•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연차, 병가 등), 휴직 사유 등	제6호
	법무·송무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관련 사항	• 수사 관련 민원서류, 고발서류, 증거서류, 처분서 등	제4호
	민원접수처리	•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업체 관련 (입찰 및 계약)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단, 처분현황은 공개)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 관리 등)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전자입찰	• 입찰예정가격 및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제5호
	계약업무	• 계약에 관한 업무 중 개인정보 관련 사항	제6호
법무·송무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관련 사항	• 수사 관련 민원서류, 고발서류, 증거서류, 처분서 등	제4호	
민원접수처리	•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유동 물류 파트	도매시장 관련 위원회	• 위원회 위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중도매(법)인 거래실적, 행정처분내역	• 중도매(법)인의 거래실적, 행정처분내역 등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도매시장 관련 위원회	• 위원회 위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경매사	• 경매사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제6호, 제7호	
	출하자	• 출하자, 산지유통인 등록 정보 (개인정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 등)	제6호	
	법무·송무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관련 사항	• 수사 관련 민원서류, 고발서류, 증거서류, 처분서 등	제4호	
	민원접수처리	•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유동 지도 파트	중도매(법)인 거래실적, 행정처분내역	• 중도매(법)인의 거래실적, 행정처분내역 등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상장예외품목 운영	• 중도매(법)인의 계좌번호, 거래실적, 행정처분내역 등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상장예외품목 운영	• 중도매(법)인의 계좌번호, 거래실적, 행정처분내역 등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매매참가인	• 매매참가인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제6호, 제7호
		중도매(법)인	• 중도매(법)인 점포 시설사용계약서	제6호, 제7호
		중도매(법)인	• 중도매(법)인 개인정보 (성명, 연락처 등)	제6호
법무·송무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관련 사항		• 수사 관련 민원서류, 고발서류, 증거서류, 처분서 등	제4호	
민원접수처리	•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상생 협력 파트	법무·송무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관련 사항	• 수사 관련 민원서류, 고발서류, 증거서류, 처분서 등	제4호	
	민원접수처리	•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정보 전략 파트	정보통신보안	• 정보통신망 보호 및 보안 유지사항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운영관리 (서버 구성, 현황, IP정보 등)	제1호, 제2호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정보시스템관리	• 정보시스템 점검 결과보고서	제5호	
	개인정보보호	• 이름, 주소,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SW과업심의위원회	• 위원회 위원 및 후보자의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제안서평가위원회	• 위원회 위원 및 후보자의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구리도매시장e몰	• 구리도매시장e몰 회원 정보 • 구리도매시장e몰 입점업체 평가승인 내용	제6호	
	법무·송무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관련 사항	• 수사 관련 민원서류, 고발서류, 증거서류, 처분서 등	제4호	
	민원접수처리	•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고객 지원 팀	임대 파트	계약관리	• 임대차계약 및 시설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제7호
		법무·송무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관련 사항	• 수사 관련 민원서류, 고발서류, 증거서류, 처분서 등	제4호
		민원접수처리	•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환경 파트	쓰레기 불법투기	• 행정처분내역 관련 사실확인서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제6호
		환경 관련 위원회	• 위원회 위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법무·송무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관련 사항	• 수사 관련 민원서류, 고발서류, 증거서류, 처분서 등	제4호
		민원접수처리	•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교통 파트	보험처리	• 차량사고에 따른 보험 처리 사실확인서 (성명, 주소, 차량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제6호
		차량 정기권 등록	•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사회복무요원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법무·송무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관련 사항	• 수사 관련 민원서류, 고발서류, 증거서류, 처분서 등	제4호
	민원접수처리	•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시설 개선팀	시설 파트	피난계획 수립 및 시행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총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 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제2호
		계약업무	• 계약에 관한 업무 중 개인정보 관련 사항	제6호
		법무·송무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관련 사항	• 수사 관련 민원서류, 고발서류, 증거서류, 처분서 등	제4호

	설비 파트	민원접수처리	•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보안조치 계획	• 도매시장 보안시설(전기실, 기계실 등) 설계도 관련 사항	제3호	
		계약업무	• 계약에 관한 업무 중 개인정보 관련 사항	제6호	
		법무·송무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관련 사항	• 수사 관련 민원서류, 고발서류, 증거서류, 처분서 등	제4호	
		민원접수처리	•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재해 건물 안전 지도 반		재난재해 관련 사항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총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 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제2호
			법무·송무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관련 사항	• 수사 관련 민원서류, 고발서류, 증거서류, 처분서 등	제4호
			민원접수처리	•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신성장 사업단	도매 시장 이전 파트	도매시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결정·승인 절차가 이행중인 정보	제8호	
		법무·송무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관련 사항	• 수사 관련 민원서류, 고발서류, 증거서류, 처분서 등	제4호	
		민원접수처리	•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신사업 파트	법무·송무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관련 사항	• 수사 관련 민원서류, 고발서류, 증거서류, 처분서 등	제4호	
	민원접수처리	•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청렴 감사 팀	감사 안전 파트	부정부패 신고센터, 내부공익신고제도, 클린신고센터 운영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자료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	제1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감사 업무	•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 (또는 피의자) 명단	제3호
		감사 업무	• 부정행위 신고 민원 통보자, 참고인 (또는 피의자) 명단	제3호
		감사 업무	• 임직원 범죄 신고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제3호
감사 및 조사	• 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감사 및 조사결과 중 개인 인적사항	제5호, 제6호		
법무·송무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관련 사항	• 수사 관련 민원서류, 고발서류, 증거서류, 처분서 등	제4호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갱신되고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